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정432-	(전화번호 75-6827)	전결규정 전결사항	조항 사항
처리기간	563	시 장		
시행일자	<i>[Handwritten Signature]</i>			
보존년한	<i>[Handwritten Signature]</i>			
보조기관	제2부시장	819	협법무담당관(고시안) 1개 & 11	
	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역계획계장	
기안책임자	김정선	76, 8, 8	조도시정비3계장	
경유수참	유신조	발신	시장	통제
제 목	도시계획 재개발(정개전7가 제1,2지구)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i>[Handwritten Signature]</i>			
제1안 내부결재				
1. 건설부 고시 제104호(76, 7, 14)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1호(76, 8, 4)로 재개발 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된 정개전7가 제1,2 재개발 지구 에 대하여 시내 중구 신당동 220-4 지주대표 흥인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운영감으로부터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이 있어				
2. 내용검토한 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재개발지구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시행을 할수 있는자로 되어 있으므로 신청지 정개전7가 제1,2 재개발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				
사용 동의를 지구 내 토지소유자인 흥인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운영감에게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의 취지와 계획에 찬동하고 사업시행하여				

결재
8.11
시장

공
2016. 8. 11

정서
관인
발송

줄것을 동의하여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하였기 제1, 2지구
를 합하여 시행토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3.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24조 동
법시행령 제25조 및 대통령령 제7754호 (75, 3, 22) 의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제25조 제11항 제68호의 규정에 의거
법안과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승인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사업 시행허가

고시안심사	1976. 8. 9	제191	호
심사자	합석	제장	법무국 담당

1. 건설부 고시 제104호 (76, 7, 14) 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181호
(76, 8, 4)로 재개발지구 결정 및 지적고시된 청계천7가 제1, 2 재개
발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을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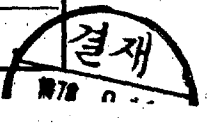
1976. 7
 시 을 특 별 시 장

2. 시행내용

지구명	위 치	지정면적	시행면적	시 행 자
청계천7가	시내중구신당동	3,517 m ²	3,507 m ²	시내중구신당동
제1재개발	220-17번지	(1,063 ⁹ 평)	(1,062 ⁸ 평)	220-4 지주
지구	일대			대표 흥인개발
제2재개발	시내중구신당동	810 m ²	768 m ²	주식회사
지구	217-15번지	(245평)	(231평)	대표 이산
	일대			윤 영 갑

제3안
추신 시내 중구 ~~신당동 463-4 (왕곡개발 307평)~~ ^{신당동 220-4} 지주 대표

· 흥인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영 갑 · · · · ·



011
시.장

제목 동 건

1.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 동의와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 위임에 의거 귀하가 사업시행로지 하는 청계천7가 제1, 2지구발 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허가 승인되었기 통보하오니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2. 본 청계천7가 재개발지구역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공공용지(도로, 주차장)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오니 예지구의 부담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행구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필요한 평가를 하여야 하오니 평가의뢰를 조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제4안

수신 중구청장

제목 동 건

1. 귀구관내 도신부 재개발구역 청계천7가 제1, 2지구에 대하여 별첨고시문 사본과 같이 시행자 지정이 승인되었기 통보하니 재개발사업수행에 적극 협조하기 바라며 제반업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제5안

수신 건설부 장관

제목 동 건

1. 귀부 고시 제46호(76, 4, 7)등 고시 제104호(76, 7, 14)호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청계천7가 제1, 2 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각 1부

제6안

수신 총무처 장관 (서울시 공보실장)

제목 관(시)보 게재의뢰

1. 당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시행 추진보처하는 청개천7가 제1, 2
재개발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고시되었기 통보하오니
관(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의뢰: 고시

나. 관(시)보 게재건명: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시행허가

(청개천7가 제1,2 지구)

다.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24조

첨부: 고시문 사본 2부